

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제안서

제안자	기관명(법인명)	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:)	

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개요	역사문화권정비구역명
	위치
	면적 (㎡)
	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필요성
	역사문화권정비사업 개요

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
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.

년 월 일

제안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사유서	수수료 없음
	2.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	
	3. 지적(地籍)이 표시된 지형도로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	